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30.

발 의 자 : 박지혜 · 이주희 · 이건태
허성무 · 김남근 · 박선원
김현정 · 황명선 · 박지원
조인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의 「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」에 따르면 산모의 85.5%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,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간 366만원에 달하여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.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21개소에 불과한 실정임.

이에 시설·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

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19 신설).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18부터 제15조의22까지를 각각 제15조의20부터 제15조의24까지로 하고,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18(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지정) ① 산후조리업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시설·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15조의9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의 폐

쇄명령을 받은 경우

3.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지정 및 지정취소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19(산후조리원 이용권 지급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산후조리원 이용권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, 신청 및 사용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5조의18(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지정) ① 산후조리업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시설·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</u></p>

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15조의9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

3.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지정 및 지정취소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19(산후조리원 이용권 지급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

<신 설>

	<p><u>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산후조리원 이용권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, 신청 및 사용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
<u>제15조의18</u> (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) (생략)	<u>제15조의20</u> (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) (현행 제15조의18과 같음)
<u>제15조의19</u> (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) (생략)	<u>제15조의21</u> (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) (현행 제15조의19와 같음)
<u>제15조의20</u> (산후조리원 평가) (생략)	<u>제15조의22</u> (산후조리원 평가) (현행 제15조의20과 같음)
<u>제15조의21</u> (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) (생략)	<u>제15조의23</u> (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) (현행 제15조의21과 같음)
<u>제15조의22</u> (모자동실 운영) (생략)	<u>제15조의24</u> (모자동실 운영) (현행 제15조의22와 같음)